



2020. 2. 15. SAT



법원행정처

목 차

contents

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290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292
내규	법원기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302
예규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304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306
	대법원규칙등 제·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일부개정예규	308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310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312
	법원회계검사예규	314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320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322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331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347

신법령 목록

349

인사

354

공지사항

392

규칙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0호 2020. 2. 3. 공포)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사무분담) ①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4조(사무분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④ <u>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u></p>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881호 2020. 2. 3. 공포)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소속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소속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당해공무수행”을 “해당 공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81조제3항 및 같은 항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제82조의2제1항 중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를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7호 중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85조제10항 본문 및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⑩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제85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⑪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5조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제13항 본문 중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을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로 한다.

제85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제85조제10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정 전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목적 여성 보건휴가 일수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85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별지

[별표 9의2]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81조에 따른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 다.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한 권장 연가 일수}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제8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 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0조의2(복무 실태의 확인·점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소속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소속기관의 복무 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p> <p>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p>

현행

개정안

제73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이 지정된 출장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81조(연가일수) ① ~ ② (생략)

③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생략)

제73조(출장공무원) ① -----

----- 해당 공무수행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연가일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83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현행과 같음)

현행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82조제5항에 따른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생략)

제84조(공가) (생략)

1. ~ 6. (생략)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8. ~ 12. (생략)

개정안

제82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

-----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

-----.

② (현행과 같음)

1.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

----- 10월 31일 -----

2. -----

③ (현행과 같음)

제84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

8. ~ 12. (현행과 같음)

현행

제85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

③ 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 ⑨ (생략)

⑩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 5. (생략)

<신설>

⑪ (생략)

⑫ (생략)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

개정안

제85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⑪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⑫ (중전의 제11항과 같음)

⑬ (중전의 제12항과 같음)

⑭ -----

- 2명 -----

현 행

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4항 및 제5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개 정 안

-----.

1. ~ 3. (현행과 같음)

⑮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87조의2(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제2항, 제85조제4항·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2에 따른다.

내규

◎ 법원기에관한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17호 2020. 1. 22. 결재)

법원기에관한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기에관한내규”를 “법원기에 관한 내규”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법연수원장” 다음에 “사법정책연구원장”을 각각 추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법원기에 관한 내규</u>	<u>법원기에 관한 내규</u>
제3조(계양)	제3조(계양)
① 법원기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u>사법연수원장</u>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법원장의 집무실과 법원의 건물 및 대법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계양한다.	① ----- <u>사법연수원장</u> , <u>사법정책연구원장</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u>사법연수원장</u>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각급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는 법원기의 기면을 축소한 표지판을 앞 밤바 중앙에 부착할 수 있다.	⑥ ----- <u>사법연수원장</u> , <u>사법정책연구원장</u> , ----- ----- -----.

예규

●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7호 2020. 1. 22. 결재)

법원공무원 주 40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용어의 정의)</p> <p>1. (생 략)</p> <p>2. “각급 기관”이라 함은 법원행 정치,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2조 (용어의 정의)</p> <p>1. (현행과 같음)</p> <p>2. -----,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p> <p>3. (현행과 같음)</p>

●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8호 2020. 1. 23. 결재)

대외기관의 자료제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다음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추가한다.

제3조제2호 중 “사법연수원” 다음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추가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업무처리의 기본 원칙)	제2조(업무처리의 기본 원칙)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u>사법연수원</u>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법원등”이라 한다)은 자료제출 등 요청이 접수되면 그 처리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소관부서: 기획조정실)와 사전에 업무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 ----- <u>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업무 협의의 주체)	제3조 (업무 협의의 주체)
각급법원등에서 자료제출 등 요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통하여야 한다.	----- ----- -----.
1. (생략) 2.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의 지방법원(지원 포함),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u>사법연수원</u> , 법원도서관은 공보관	1. (현행과 같음) 2. ----- ----- ----- <u>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6조(처리 후 결과 통지 등)	제6조(처리 후 결과 통지 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공문서를 접수한 각급법원등의 처리과는 그 사본을 <u>기획제1심의관</u>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기획조정심의관</u> ----- -----.

● **대법원규칙등 제·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09호 2020. 1. 23.결재)

대법원규칙등 제·개폐시 문서 파일의 송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사법지원심의관실”을 “민사지원제1심의관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무과) 대법원규칙 등을 관리하는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u>사법지원심의관실</u> : 대법원재판예규, 사법지원실내규 3. ~ 7. (생략) 	<p>제3조(주무과)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민사지원제1심의관실</u> : -----, ----- 3. ~ 7. (현행과 같음)

◎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0호 2020. 1. 23. 결재)

대법원예규문서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사법지원심의관실”을 “민사지원제1심의관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관리부서의 지정)</p> <p>대법원예규문서의 관리번호(이하 “관리번호”라 한다)는 대법원예규문서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주무과”라 한다)에서 부여하며, 주무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재판예규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u>사법지원심의관실</u> 3. ~ 4. (생략) 	<p>제4조(관리부서의 지정)</p> <p>-----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민사지원제1심의관실</u> 3. ~ 4. (현행과 같음)

●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1호 2020. 1. 23. 결재)

법원 장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법연수원” 다음에 “사법정책연구원”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의의 구분)</p> <p>① (생 략)</p> <p>② 제1항 제2호의 각급기관장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u>사법연수원</u>,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한다.</p>	<p>제2조(장의의 구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사법연수원</u>, <u>사법정책연구원</u>, ----- -----.</p>

● 법원회계검사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2호 2020. 1. 23. 결재)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의 각종 회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종류) ① 회계검사는 정기회계검사와 수시회계검사로 구분한다.

1. 정기회계검사는 연중계획에 의하여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수시회계검사는 정기회계검사와는 별도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법원행정처는 수시회계검사의 일환으로 매월 25일까지 전월 지출대장, 지급대장,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등을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송부받아 회계업무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사전 점검·심사하는 일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검사기관과 검사대상기관) 검사기관과 검사대상기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검사관의 임명 및 서약서 제출) ① 검사관은 법원행정처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지방법원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법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검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검사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검사요원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회계검사는 검사 실시에 앞서 검사사항을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른 검사와의 중복 또는 반복 여부, 검사의 회수 및 일정의 적부, 검사반의 편성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계획 수립시 검사대상기관이 검사로 인해 업무수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실시 통보) 각종 검사는 실시 7일전까지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검사관의 권한) ① 검사관은 검사 상 필요한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 및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미한 사항이거나 검사현장에서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 중 바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문답서의 작성) 검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 검사관은 관계자의 소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 경위 및 배경을 밝히고 관계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검사보고) ① 법원행정처 소속 검사관은 검사결과를 매년 12월 20일 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검사결과를 검사 종료 후 30일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기관)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법원행정처장이 한다.

제11조(시정·주의 요구) ①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 요구) ①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권고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검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5조(통보) ① 예산담당관은 검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법원행정처 회계책임관에게 매년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관의 비밀엄수) 검사관은 검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1 및 별지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검사기관과 검사대상기관의 범위(제3조 관련)

검사종별	검사기관	주무부서	검사대상기관의 범위	비고
정기 회계검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예산담당관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사무국 설치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총무과	관할 사무과 설치 지원 관할 시·군법원 및 등기소	
수시 회계검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예산담당관실	1.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2.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별지 1]

서약서

본인은 이번에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추호라도 사정이나 개인적 친분관계 또는 외부압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이러한 영향을 받아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및 성명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법원(지원)장 귀하

●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3호 2020. 1. 23. 결재)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중 가. 및 마.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11. 비치장부 및 일계표</p> <p>가. 수입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p> <p><u>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은 총괄과 분입</u> <u>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월말일</u> <u>현재의 월계 및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u></p> <p>나. ~ 라. (생략)</p> <p>마. 결손처리 전산 등초본 편철장</p>	<p>11. 비치장부 및 일계표</p> <p>가. <삭제></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삭제></p>

◎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전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4호 2020. 1. 31. 결재)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다음부터 “전산정보관리국장”이라 한다)이 사용권한을 승인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판사무시스템”은 법관,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jaepan.scourt.go.kr’, ‘justice.scourt.go.kr’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영장, 조회, 출납 등과 같이 구분 가능한 단위 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3.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을 말한다.
4. “권한 관리자”는 전산정보관리국장, 각급 법원 사무분담을 기준으로 한 각 과의 과장 또는 동등한 역할을 하는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5. “권한 관리 보조자”는 권한 관리자를 보조하는 법원공무원 및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별도의 규칙이나 예규가 존재하는 업무시스템을 제외한 재판사무시스템에 적용한다.

제5조(권한 관리자의 역할) ① 권한 관리자는 사용자 등록,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권한 부여, 부여된 권한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대한 사용자 등록
2.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및 회수

3. 부여된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의 적정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② 권한 관리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 관리 보조자에게 사용권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관리 의무) ① 사용자는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② 사용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 관리자에게 알려 사무분담에 맞는 권한이 부여되거나 회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방식) ①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용자는 별표 1-1 또는 별표 1-2 양식에 따라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 단,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소속의 사용자는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신청한다.

② 사용자 등록 신청을 받은 권한 관리자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자 등록 후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무분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한다.

③ 이미 사용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용자 중 다른 법원에 동시에 권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 양식에 의하여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신청한다. 이때 대직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으로, 사용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별도관리 대상 업무) ① 전산정보관리국장은 별표 3-3 목록의 업무시스템 등을 비롯하여 금전 출납, 업무상 비밀 유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해당되어 지문 인증 등의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 중요 업무시스템을 “별도관리 대상 업무”로 관리한다.

② 사용자에게 별도관리 대상 업무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의 권한 관리자는 별표 3-1 또는 별표 3-2 양식에 의하여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사용권한 부여신청을 하고,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제9조(권한 부여 내역 통보) 각급 법원 권한 관리자는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부여가 이 예규 또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과 다르게 처리되었거나,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1, 1-2, 2, 3-1, 3-2, 3-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재판사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단건)

재판사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해지		
신청인의 사용자ID	(코트넷 ID와 같음)		
법원		소속 부서	
신청인 성명		직급/직위	
사무분담			
※ 신청업무 역할 또는 사무분담 목록은 재판사무시스템 등의 권한 부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기재합니다.(재판사무시스템 CM102, CM103 화면 참조)			

위와 같이 20 . . .부터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표 1-2] 재판사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다건)

재판사무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서

OO법원

번호	신청 구분	사용자 ID	사용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직급	사무 분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면)

위와 같이 20 . . .부터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청인 : (인)

[별표 2] 재판사무시스템 사용자 등록법원 추가신청서

재판사무시스템 사용자 등록법원 추가신청서

OO법원

번호	사용자 ID	사용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직급	추가 등록법원	사용 기간
1						
2						
3						
4						
5						
6						
7						
8						
9						
10						

(/ 면)

위와 같이 20 . . .부터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자의 소속법원 추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본 신청은 각급 법원 과장 이상의 결재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공문으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별표 3-1] 재판사무시스템 별도관리 대상 업무 사용권한 부여 신청서 (단건)

재판사무시스템 별도관리 대상 업무 사용권한 부여 신청서

1. 권한 부여 신청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신청 <input type="checkbox"/> 해지		
사용자ID	(코트넷 ID와 같음)		
법원		소속 부서	
사용자 성명		직급/직위	
신청 업무 목록			
※신청업무 목록은 [별표 3-3] 별도관리 대상 업무 목록 중 필요한 업무를 작성합니다.			
2. 이용자 해지 신청(전임자)			
성명		소속	
사용자ID		직급/직위	
※ 기존 사용자 권한 해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기재			

위와 같이 20부터 재판사무시스템의 별도관리 대상 업무 권한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본 신청은 각급 법원 과장 이상의 결재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3-2] 재판사무시스템 별도관리 대상 업무 사용권한 부여 신청서 (다건)

재판사무시스템 별도관리 대상 업무 사용권한 부여 신청서

OO법원

번호	신청 구분	사용자 ID	사용자 성명	소속 부서	직위/직급	신청업무 목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면)

위와 같이 20 . . .부터 재판사무시스템의 별도관리 대상 업무 권한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본 신청은 각급 법원 과장 이상의 결재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공문으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 신청업무 목록은 [별표 3-3] 별도관리 대상 업무 목록 중 필요한 업무를 작성합니다.

[별표 3-3] 재판사무시스템 별도관리 대상 업무 목록

재판사무시스템 별도관리 대상 업무 목록

번호	업무 구분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1	보관금	BG710	환경정보/출납담당자 등록
2	재산조회	JJ500	재산조회eap편집기
3	국민참여재판	WBS100	배심원 후보예정자 관리
4	"	WBS301	배심원 후보자 추출/재추출
5	"	WBS303	배심원, 예비배심원 선정/불선정
6	"	WBS305	배심원 관리
7	"	WBS307	배심원후보자 정보등록
8	"	WBS401	배심기일지정 및 결과등록(기일별)
9	"	WBS403	배심기일지정 및 결과등록(사건별)
10	"	WBS501	비용지급
11	"	WBS503	과태료부과
12	기타사건	WET395	개명사건 신용정보조회 전송/수신
13	회생파산	WHP615	변제계획 등록
14	"	WHP631	변제금 계좌이체(수동)
15	"	WHP647	과오납처리
16	"	WHP711	채권자/채무자 계좌등록
17	전문심리위원	WJW10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관리
18	"	WJW103	전문분야 코드 관리
19	"	WJW105	후보자 등재 통지서 출력
20	"	WJW801	사건지정 현황
21	"	WJW803	활동내역 현황
22	"	WJW805	수당지급 현황
23	공탁	WKT211	수리/불수리
24	"	WKT241	기타 수리/불수리
25	"	WKT811	사용자관리
26	영장	WYJ111	영장종류별조회
27	"	WYJ412	영장사건조회
28	"	WYJ413	영장사건명별조회
29	"	WYJ416	허가서조회
30	"	WYJ419	영장사건조회(전국법원)
31	"	WYJ511	허가서사용자및비밀번호설정
32	"	WYJ598	영장당직용PC관리로그조회
33	"	WYJ599	영장당직용PC관리

※ 개인정보·금전 등과 관련하여 별도 사용자권한 부여가 필요한 프로그램 목록

●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5호 2020. 2. 5. 결재)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가. (1). (가). 중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19.1.2.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일
⇒ 11일(재직기간 1개월이상 1년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일 = 13일
- '19.1.2.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2일
⇒ 0일(재직기간 1개월미만) + 연가가산 2일 = 2일

3. 가. (1). (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 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 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다음과 같음

- 공로퇴직연수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등

3. 가. (1). (나).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법원 공무원규칙 제83조제1항제2호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됨

3. 가. (4). (가). 중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등을”로 한다.

3. 가. (4). (마). 1). 중 “7월 1일부터 15일”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으로 하고, 3. 가. (4). (마). 2).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3. 가. (5). (가). 1). 나). 중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다”를 “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저축된다.”로 한다.

3. 가. (5). (가). 1). 라).를 삭제한다.

3. 가. (8). (나).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과 연도 중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등

3. 나. (1). (가). 1).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다. (3). 중 사례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일 경우는 공가 처리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 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3. 라. (1). (라). 1). 중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를 “결혼 휴가”로 하고, “2)”를 “3)”으로 하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3. 라. (2). (다). 1). 중 “11주”를 “15주”로 하고, “5일”을 “10일”로 하며, 2)를 삭제한다.

3. 라. (2). 중 (라)부터 (마)를 각각 (마)부터 (바)까지로 하고,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다)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예시①)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10일 안에 3일의 휴가 사용

※ (예시②)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 유·사산한 날부터 30일 안에 3일의 휴가 사용

3. 라. (3). 중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생리기간 중 휴식”으로 한다.

3. 라. (9). (나). 중 “셋”을 “둘”로 한다.

3. 라.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임신검진휴가

(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가)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나)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승인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규칙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른다.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기준

(제87조의2 관련)

1. 휴가일수 계산 등

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예컨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공무원은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단절 없이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4시간을 1일로 봄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begin{array}{l} \text{「법원공무원규칙」 제81조} \\ \text{에 따른 재직기간별} \\ \text{연가일수} \end{array}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 \text{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시간제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권장 연가 시간은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rray}{l} \text{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 \text{공지한 권장 연가일수} \end{array}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 \text{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3.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begin{array}{l} \text{제83조제1항 또는} \\ \text{제2항에 따른 병가일수} \end{array} \times \frac{\text{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 \text{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위 가.목의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82조의5제5항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4.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24개월의 범위 산정

※ 예시

구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반일제 (주5일, 하루 4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가능 (하루 1시간)
격일제 (월·수 8시간, 금 4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가능 (월·수 2시간, 금 1시간)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하게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3. 라. (2). (다). 및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유·사산휴가를 부여하며, 배우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 중인 남성공무원에게는 개정시행일부터 배우자의 유·사산휴가의 종료일 이내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조(임신검진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예규 시행 당시 개정 전 3. 라. (3).의 규정에 따른 임신검진 목적 여성 보건휴가 일수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3. 라.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할 때 그 사용 일수를 공제하고 부여한다.

제4조(배우자 출산 휴가 분할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3. 라. (1). (라). 2)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과 사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생략)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16.7.22일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5일

⇒ 3일(재직기간 3월이상 6월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일 = 5일

○ '16.7.22일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2일

⇒ 0일(재직기간 3월미만) + 연가가산 2일 = 2일

(나) 연가일수의 가산

- 1)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

개정안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연가일수

(가) (현행과 같음)

※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연가가산 사례

○ '19.1.2. 현재 재직기간 4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1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13일

⇒ 11일(재직기간 1월이상 1년미만 연가일수) + 연가가산 2일 = 13일

○ '19.1.2. 현재 재직기간 2월인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3호·10호에 따라 임용된 자)이 호봉획정 시 유사경력이 2호봉 인정된 경우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 : 2일

⇒ 0일(재직기간 3월미만) + 연가가산 2일 = 2일

(나) 연가일수의 가산

- 1)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

현행	개정안
<p><u>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u>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p>
<p><u><신설></u></p>	<p><u>※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u></p>
	<p><u>은 다음과 같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로퇴직연수기간</u> · <u>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u> · <u>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u> · <u>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u> · <u>직제나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등</u>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4)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u>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1일의 연가가산 대상이 됨</u></p>	<p>4)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u>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u> <u>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83조제1항제2호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됨</u></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연가 사용의 권장</p>	<p>(4) 연가 사용의 권장</p>
<p>(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p>	<p>(가) -----</p>

현행

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 ~ (라) (생략)

(마) (생략)

1)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일수 중에서 사용하여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그 해 9월 30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연가의 저축

(가) (생략)

1) (생략)

가) (생략)

나)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기관 소속 공무원이 미보상 권장연가일수보다 연가를 적게 사용한 경

개정안

-----10일 이상
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등을
-----.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1) ----- 6월 1일부터 7월 31일 -----

-----.

2) -----

----- 10월 31일 -----
-----.

(5) 연가의 저축

(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현행	개정안
<p>우에는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연가보유 일수에서 권장연가 일수를 빼 나머지 <u>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다.</u></p>	<p>----- ----- ----- <u>미사용 연가 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으며, 나머지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자동으로 이월·저축된다.</u></p>
<p>다) (생략)</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이월·저축하는 연가일수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u></p>	<p>〈삭제〉</p>
<p>(6) ~ (7) (생략)</p>	<p>(6) ~ (7) (현행과 같음)</p>
<p>(8) 연가일수의 공제</p>	<p>(8) 연가일수의 공제</p>
<p>(가) (생략)</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생략)</p>	<p>(나) (현행과 같음)</p>
<p>〈신설〉</p>	<p>※ <u>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퇴직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u> * <u>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u> · <u>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u> · <u>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u> · <u>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u> · <u>공로퇴직연수기간</u> · <u>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과 연도 중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u> · <u>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u>

현행

개정안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생략)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설>

다. 공가

(1) ~ (2) (생략)

(3) 공가의 사례

【사례 1】 (생략)

【사례 2】 (생략)

【사례 3】 (생략)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와 관련하여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등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현행과 같음)

1) -----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 공가

(1) ~ (2) (현행과 같음)

(3) 공가의 사례

【사례 1】 (현행과 같음)

【사례 2】 (현행과 같음)

【사례 3】 (현행과 같음)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일 경우는 공가처리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현행	개정안
<p>라. 특별휴가</p> <p>(1) (생략)</p> <p>(가) ~ (다) (생략)</p> <p>(라) (생략)</p> <p>1) 다만, 본인 <u>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u> <u>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u> <u>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u> <u>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u> <u>막 날이 30일 범위에 있어야 한다.</u></p> <p><u><신설></u></p> <p>2)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 <p>(2) 출산휴가</p> <p>(가) ~ (나) (생략)</p> <p>(다) (생략)</p> <p>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 (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u>11주</u>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 부터 <u>5일까지</u></p> <p>2) <u>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u> <u>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u> <u>일까지</u></p> <p>3) ~ 5) (생략)</p> <p><u><신설></u></p>	<p>라. 특별휴가</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현행과 같음)</p> <p>1) ----- <u>결혼 휴가</u> ----- ----- ----- -----.</p> <p>2) <u>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u> <u>가 발생한 날부터 90일의 범위 안에</u> <u>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u> <u>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할 때 마지</u> <u>막 날이 90일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u></p> <p>3) ----- ----- -----.</p> <p>(2) 출산휴가</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1) ----- ----- <u>15주</u> ----- ----- <u>10일</u>-----</p> <p><u><삭제></u></p> <p>3) ~ 5) (현행과 같음)</p> <p>(라) <u>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u> <u>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u></p>

현행

개정안

- (라)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한다.
- (마)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3)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4) ~ (8) (생략)
- (9) 자녀돌봄 휴가
(가) (생략)

-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다)에 따른 기간 내에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 (예시①)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 (예시②)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마) -----

-----.
- (바) -----

-----.
- (3) 여성보건휴가
----- 생리기간 중 휴식 -----

-----.
- (4) ~ (8) (현행과 같음)
- (9) 자녀돌봄 휴가
(가)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돌봄 휴가를 연 1일(8시간) 가산한다. 이때 자녀는 자녀돌봄휴가의 대상이 되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2일(16시간)을 초과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p>	<p>(나) ----- 둘 ----- ----- ----- ----- 둘 ----- ----- -----</p>
<p>(다) (생략)</p>	<p>(다) (현행과 같음)</p>
<p><u><신설></u></p>	<p>(10) 임신검진휴가</p>
	<p>(가)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p>
	<p>2)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p>
	<p>가)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p>
	<p>나)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p>
	<p>(나) 승인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p>

현행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임용된 시간제근무공무원,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법원공무원규칙」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5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3항, 제8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안

4. 시간제근무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규칙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휴가는 제79조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의2제1항, 제82조의5제4항, 제83조제1항 및 제2항, 제85조제4항·제5항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216호 2020. 2. 6. 결재)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4. 나. 중 “52.5%”를 각각 “51.5%”로 하고, 같은 나. 의 ○ 및 <참고: 조정지수 산정 방법> 중 “52.5%”를 각각 “51.5%”로, “0.75”를 각각 “0.7357...”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II. 지급기준</p> <p>1. ~ 3. (생 략)</p> <p>4. 지급등급과 지급률</p> <p>가. (생 략)</p> <p>나. 지급기준액의 조정</p> <p>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 (첫 번째 성과상여금 <u>52.5%</u>, 두 번째 성과상여금 <u>52.5%</u>)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조정함.</p> <p>※ (생 략)</p> <p>* (생 략)</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2.5\%}{70\%} = 0.75$</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2.5\%}{70\%} = 0.75$</p>	<p>II. 지급기준</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지급등급과 지급률</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지급기준액의 조정 -----</p> <p>-----</p> <p>-----<u>51.5%</u>,-----</p> <p>----- <u>51.5%</u>-----</p> <p>-----.</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1.5\%}{70\%} = 0.7357...$</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의 조정지수 = $\frac{51.5\%}{70\%} = 0.7357...$</p>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p> <p>① (생 략)</p> <p>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 표준평균지급률(<u>52.5%</u>) / 평균지급률(70%) = <u>0.75</u></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 표준평균지급률(<u>52.5%</u>) / 평균지급률(70%) = <u>0.75</u></p>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 : 조정지수 산정 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p> <p>□ 첫 번째 성과상여금 -----(<u>51.5%</u>) / ----- = <u>0.7357...</u></p> <p>□ 두 번째 성과상여금 -----(<u>51.5%</u>) / ----- = <u>0.7357...</u></p>

신법령 목록

(2020. 1. 16. ~ 1. 31.)

법률

법률제16866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673	2020. 1. 21	4
법률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16868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686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687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19677	2020. 1. 29	6
법률제16872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16873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1687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68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16876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16877호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16878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6879호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1688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	16
법률제16881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16882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20
법률제16883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1688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16885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677	2020. 1. 29	23
법률제16886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	"	24
법률제1688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25
법률제16888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16889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16890호	청원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16891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28
법률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16893호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16894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16895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	"	36
법률제16896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1689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1
법률제1689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16899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6900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16901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46
법률제16902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	"	55
법률제16903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05
법률제16904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	106

법률제16905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19677	2020. 1. 29	126
-----------	---------------	-------	-------------	-----

조약

조약제2444호	제3다자투자자기금 개설협정	19670	2020. 1. 16	4
조약제2445호	제3다자투자자기금의 관리를 위한 협정	"	"	20
조약제24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연방 각의 간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태조사결과 상호신뢰에 관한 협정	19675	2020. 1. 23	5
조약제2452호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19677	2020. 1. 29	155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356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673	2020. 1. 21	10
대통령령제30357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30358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3031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19
대통령령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	"	20
대통령령제30359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9676	2020. 1. 28	4
대통령령제30360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77	2020. 1. 29	129
대통령령제30361호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	"	"	130
대통령령제3036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30363호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3036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3036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5
대통령령제3036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	136
대통령령제30367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7
대통령령제30368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	"	138

대통령령제30369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677	2020. 1. 29	138
대통령령제30370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39
대통령령제3037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0
대통령령제30372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2
대통령령제30373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4
대통령령제30374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5
대통령령제30375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6
대통령령제30376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47
대통령령제30377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9
대통령령제30378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9
대통령령제30379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0
대통령령제30380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1
대통령령제303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2

총리령

총리령제158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3	2020. 1. 21	21
총리령제1590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8
총리령제159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5
총리령제159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4	2020. 1. 22	4

부령

보건복지부령제70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0	2020. 1. 16	34
-------------	------------------	-------	-------------	----

해양수산부령제385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670	2020. 1. 16	46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4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증정정	"	"	55
행정안전부령제15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1	2020. 1. 17	6
고용노동부령제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증정정	"	"	15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3	2020. 1. 21	37
중소벤처기업부령제2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8
법무부령제965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증정정	"	"	52
국방부령제1008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5	2020. 1. 23	11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8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	13
국토교통부령제687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4
국방부령제1009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7	2020. 1. 29	163
환경부령제84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65
환경부령제84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7	2020. 1. 29	167
중소벤처기업부령제24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증정정	"	"	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9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9678	2020. 1. 30	3
법무부령제966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19679	2020. 1. 31	6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보건복지부령제70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
보건복지부령제705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
고용노동부령제2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인사

인사발령 법 제1호

2020. 1.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현석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30.부터 2020. 2. 29.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2호

2020. 1. 7.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가.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지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1. 13.부터 2020. 6. 30.까지 휴직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3호

2020. 1. 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변경			
	인사발령 법 제197호(2019. 12. 31.자)의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응희에 대한 복직 발령 일자 부분 “2020. 1. 17.자”를 “2020. 2. 21.자”로 동일자로 변경함. 끝.		

인사발령 법 제4호

2020. 1. 10.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기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1.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5호

2020. 1. 10.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검사장			
	대법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보함 (2020. 1.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6호

2020. 1. 14.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동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1. 15.자) 끝.

인사발령 법 제7호

2020. 1. 14.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소병진	2020. 2. 19.부터 2020. 6. 18.까지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노종찬	" " 끝.

인사발령 법 제8호

2020. 1. 1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해성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 포함 (2020. 1. 27.자) 끝.

인사발령 법 제9호

2020. 1. 1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오규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1. 28.자) 끝.

인사발령 법 제10호

2020. 1. 16.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한익수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정년퇴직) (2020. 1. 31.자) 끝.

인사발령 법 제12호

2020. 1. 2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세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17.부터 2021. 2. 9.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대현	2020. 2. 23.부터 2020. 8. 30.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민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3.부터 2020. 3. 31.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윤동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1.부터 2020. 2. 23.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강지웅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2.부터 2020. 8. 1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17.부터 2021.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홍은기	2020. 2. 23.부터 2020. 7. 2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임상은	2020. 2. 22.부터 2020. 7. 3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정서현	2020. 2. 17.부터 2020.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민주	2020. 2. 22.부터 2021.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승주	2020. 2. 22.부터 2020. 7. 1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곽여산	2020. 2. 1.부터 2020. 2.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구지방법원 판사 나혜선 2020. 2. 22.부터 2020. 8. 9.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2.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서은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우영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혜진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허상진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영욱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김지연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김희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문종철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박가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박상곤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박진숙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인경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자)
”	안지열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2.자)
”	오지영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이진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전흔자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정은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정지선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서울회생법원 판사	최우진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선희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이이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7.자)
”	이지혜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신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박나리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0.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민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지영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남해인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문주희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5.자)
”	봉지수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심승우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안민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0.자)
”	홍다선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임한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승혜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0.자)
”	정운섭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김미경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경희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차호성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대전가정법원 판사	권세진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정호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10.자)
울산지방법원 판사	이승민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이준범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	정현수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울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지훈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2.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22.부터 2021.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판사	홍은아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20.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정주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자)
전주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3.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도우람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에 포함 (2020. 2. 21.자)
제주지방법원 판사	김기춘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제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2.자) 끝.

인사발령 법 제14호

2020. 1. 2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태악	대법원 근무를 명함 (2020. 1. 29.자) 끝.

인사발령 법 제15호

2020. 1. 2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발령변경			
	인사발령 법 제12호(2020. 1. 21.)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세리에 대한 휴직 발령 기간 부분 “2020. 2. 17.부터 2021. 2. 9.까지”를 “2020. 2. 24.부터 2021. 2. 9.까지”로 변경함. 끝.		

인사발령 법 제16호

2020. 1. 28.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정무직			
	사법정책연구원장	강현중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2. 3.자) 끝.

인사발령 법 제17호

2020. 1. 2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정무직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함 (2020. 2. 3.자) 끝.

인사발령 법 제18호

2020. 1. 29.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			
가. 지방법원 판사			
		이회기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김철환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이균부	판사에 임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0. 2. 1.자)
2.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회기	2020. 2. 3.부터 2020. 2. 18.까지 신임전담법관 연수교육 피교육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철환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균부	" 끝.

인사발령 법 제19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연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범준	판사에 연임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장진훈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양형권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윤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대성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승만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천	”
	”	김현룡	”

(2020. 2. 18.자) 끝.

인사발령 법 제20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연임)			
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희경	판사에 연임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혜영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경원	판사에 연임함
	"	김미호	"
	"	김수연	"
	"	박소연	"
	"	신성철	"
	"	이영은	"
	"	이유영	"
	"	이진영	"
	"	이효은	"
	"	정금영	"
	"	조아라	"
	서울가정법원 판사	백경현	"
	"	조용희	"

서울가정법원 판사	홍영진	판사에 연임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신혜원	”
”	전성준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강동훈	”
”	김재은	”
”	이이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권영혜	”
”	류희현	”
”	오소현	”
”	이광열	”
”	홍윤하	”
”	홍지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수아	”
”	최선재	”
”	최호진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권경선	”
”	박수현	”
”	박용근	”
”	한혜윤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강진우	”
”	경정원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송현	판사에 연임함
”	김종신	”
”	이인경	”
”	정교형	”
”	정왕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강영기	”
”	김민주	”
”	김정웅	”
”	윤동연	”
”	임태연	”
”	조연수	”
인천지방법원 판사	남해인	”
”	박정홍	”
”	박혜정	”
”	안지연	”
”	이영립	”
”	임윤한	”
”	황지애	”
인천가정법원 판사	진정화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김미진	”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성인혜	판사에 연임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경미	”
”	김효연	”
”	유성현	”
”	이종민	”
”	이혜미	”
”	이희승	”
”	한나라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영주	”
”	박은진	”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범선운	”
”	이경호	”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수정	”
”	최지아	”
”	한지연	”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민경	”
대전가정법원 판사	권세진	”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고지은	”

대구지방법원 판사	전명환	판사에 연임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민희진	”
”	박종현	”
”	우경아	”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현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백지예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규도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동관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성경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수정	”

(2020. 2. 22.자) 끝.

인사발령 법 제21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연임)			
가.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판사에 연임함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규홍	”
	수원지방법원장	윤준	”
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노태악	판사에 연임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시철	판사에 연임함
”	김용빈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우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
”	이균용	”
”	정종관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찬돈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광만	”

(2020. 3.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22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임명(연임)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래니	판사에 연임함
	”	김병철	”
	”	김진철	”
	”	박성인	”
	”	성보기	”
	”	심재남	”
	”	이상주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	판사에 연임함
”	이일엽	”
”	이종채	”
”	정계선	”
”	최호식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양준	”
”	조미연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덕진	”
”	양철한	”
”	이민수	”
”	조성필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혁재	”
”	최병률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내주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승정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지호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덕	”
”	문보경	”
”	이태영	”
”	조영범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묵	판사에 연임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대	”
”	김형태	”
”	최종한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민수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곤	”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정환	판사에 연임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인석	”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완희	”
대구고등법원 판사	이현우	”
부산고등법원 판사	최봉희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용하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종우	”
수원고등법원 판사	심연수	”
특허법원 판사	권순민	”

(2020. 3. 1.자) 끝.

인사발령 법 제23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나. 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주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한 승	”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이진만	”
	”	조용현	”
라.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2. 13.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귀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2.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24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	안성준	”
	”	정재현	”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	”
	”	정병실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찬	”
	”	허 윤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명예퇴직)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민석	”

다.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진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

라.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성용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	----------------

마.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주은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주대성	”

(2020. 2.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25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에 포함
	”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에 포함
	”	이승영	특허법원장에 포함
나. 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배광국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에 포함. 법원도서관장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승훈	청주지방법원장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겸임함

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수원지방법원장	윤 준	"
대전지방법원장	김필곤	"
청주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상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소재지 근무) 겸임을 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최규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라. 원로법관

광주고등법원장	최상열	원로법관을 지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	-----	---------------------------------

특허법원장

조경란

원로법관을 지명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에
보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판사를 지명함.2020. 2. 13.부터 2020. 7. 3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2020. 2.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26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에 보함
	”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보함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서태환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강열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에 보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황진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박준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심 담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강경구	”
”	엄상필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남성민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재권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제정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나. 원로법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오	원로법관을 지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판사를 지명함. 2020. 2. 13.부터 2020. 2.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2020. 2. 13.자)
-------------	-----	---

2. 휴 직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손지호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0. 2. 13.부터 2021. 2. 11.까지 휴직을 명함
-------------	-----	---

3. 결 입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상재	법원도서관장에 겸임함. 단, 겸임청 근무를 명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성수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겸임함 (2020. 2. 13.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복형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겸임함 (2020. 2. 24.자)
--------------------------------	-----	--

4. 겸임해임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2020. 2. 13.부터 2020. 8.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지영난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성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을 면함

5. 직무대리해제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2020. 2. 13.자)
--------------------------------	-----	---

6.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민구	2020. 2. 13.부터 2020. 8.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문용선	”	”
”	이균용	”	”

끝.

인사발령 법 제27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	---------	----	------

1. 전 보

가.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태식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에 포함 (2020. 2. 13.자)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인숙	인천가정법원장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승만	대전가정법원장에 포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울산가정법원장에 포함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태수	광주가정법원장에 포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장	한숙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광주가정법원장	고영구	”
울산가정법원장	남근욱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인천가정법원장	최복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0. 2. 24.자) 끝.

인사발령 법 제28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룡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포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성주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남양우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경미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	왕정옥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해제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재오	대전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문주형	부산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박선준	”
”	손철우	”
”	이형근	”
”	구자현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기우종	”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진	광주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김종기	”
”	원익선	”
”	이숙연	”
”	박재우	수원고등법원 판사에 포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2. 직무대리

가.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대전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현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명함
”	김관용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직무대리를 명함

(2020. 2. 13.자) 끝.

인사발령 법 제29호

2020. 1. 31.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파견(연구과정)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운정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이재경	2020. 2. 24.부터 2021. 2. 23.까지 중국 화동정법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2. 교육파견(방문과정)			
가.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진혁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볼티모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도영오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혜성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강기남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휴스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경훈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포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미선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UC어바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혜은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종환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샌디에고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회생법원 판사	임동한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권순엽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UC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상률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예시바(카도조)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이은명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주연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	이장형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아메리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김희진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페퍼다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기풍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로올라메리마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수원지방법원 판사	연선주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UC버클리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수현	2020. 2. 24.부터 2020. 12. 23.까지 미국 골든게이트대학 교육파견을 명함. 끝.

인사발령 법 제198호

2020. 1. 3.

항	소속 및 직위	성명	인사명령
1. 퇴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0. 1. 7.자) 끝.

공지사항

● 1월 신착 법률도서·일반도서 및 법률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 대법원열람실에 1월분 법률도서·일반도서(313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18종)이 입수되어 다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 법률도서

[법률]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民主法學 v.7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관악사	2019
2	반짝반짝 빛나는 판사 이승윤	이승윤 판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 상상출판	2019
3	法과 政策研究 v.19-4	한국법정책학회 / 韓國法政策學會	2019
4	법무자료 제333집: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 : 2018년 연례보고서	한국. 법무부 / 법무부	2019
5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 행성비	2019
6	法曹 v.2019-5	법조협회 / 法曹協會	2019
7	法學論攷 v.67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9
8	사법논집= 제68집	법원도서관 / 사법발전재단	2019
9	사법논집= 제69집	법원도서관 / 사법발전재단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0	安岩法學 v.59	안암법학회 / 무지개 출판사	2019
11	一鑑法學 v.44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건국대학교 법학 연구소	2019
12	저스티스 v.174	한국법학원 / 韓國法學院	2019
13	저스티스 v.175	한국법학원 / 韓國法學院	2019
14	統一과 法律 v.40	한국, 법무부 / 법무부	2019
15	漢陽法學 v.68	한양법학연구회 / 漢陽法學會	2019
16	ロールズ正義論入門	森田浩之 / 論創社	2019
17	法と哲学 v.4	井上達夫 / 信山社	2018
18	法と哲学 v.5	井上達夫 / 信山社	2019
19	法の經驗的社会科学の確立に向けて: 村山眞維先生古稀記念	村山眞維 / 信山社	2019
20	法律英語の用法・用語	長谷川俊明 / 第一法規	2018
21	法律学概要	大西齋 / 大学教育出版	2019
22	法律学習入門: プレゼンテーション対応型	小野秀誠 / 信山社	2019
23	法三章としての法基範	山本修作 / 晃洋書房	2019
24	法政策學の試み, 第18集: 特集・労働争義	神戸大學法政策研究會 / 信山社	2018
25	法政策學の試み, 第19集: 特集・独禁法と労働法	神戸大學法政策研究會 / 信山社	2019
26	法曹の倫理	森際康友 / 名古屋大學出版會	2019
27	法学の世界	南野森 / 日本評論社	2019
28	法學新報 v.126-3	中央大學法學會 / 有斐閣	2019
29	變動する社会と法・政治・文化: 成城学園創立100周年記念・成城大学法学部創設40周年記念	成城大学法学会 / 信山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0	僕らが生きているよのなかのしくみは「法」でわかる: 13歳からの法学入門	遠藤研一郎 / 大和書房	2019
31	市民生活関係法の新たな展開: 大西泰博先生古稀記念論文集	大西泰博 / 敬文堂	2019
32	新時代の法学・憲法	山田勉 / 建帛社	2019
33	心理職・援助職のための法と臨床: 家族・学校・職場を支える基礎知識	廣井亮一 / 有斐閣	2019
34	(有斐閣)判例六法	有斐閣 / 有斐閣	2018
35	早稲田法學 v.94-4	早稲田大學法學會 / 早稲田大學法學會	2019
36	地球社会法学への誘い	山内惟介 / 信山社	2018

[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7	(2014) 건설감정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8	(간추린) 改正稅法 v.2018	한국. 재무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 財務部	2019
39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김형배 / 삼일	2019
4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행위유형,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실무 및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법원행정처	2019
41	稅務와 會計 研究 v.8-3	한국조세연구소 / 한국조세연구소	2019
42	스포츠와 법 v.22-4	한국스포츠법학회 / KASEL : 한국스포츠법학회	2019
43	의료법학 v.20-1	대한의료법학회 / 대한의료법학회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44	의료법학 v.20-2	대한의료법학회 / 대한의료법학회	2019
45	조세연구 v.19-3	한국조세연구포럼 / 세경사	2019
46	租稅學術論集 v.35-3	한국국제재정협회 / 韓國國際租稅協會	2019
47	창작과 권리 v.2019-4	세창출판사 / 세창출판사	2019
48	(ケースブック)獨占禁止法	金井貴嗣 / 弘文堂	2019
49	(スタンダード)法人税法	渡辺徹也 / 弘文堂	2019
50	改正労働基準法の基本と実務	石寄信憲 / 中央經濟社	2019
51	建設業法と建設業許可: 行政書士による実務と解説	日本行政書士会連合會 / 日本評論社	2019
52	(建設業事業者のための)労働管理・安全衛生・社会保険の法律と手続き: 働き方改革法に対応!	小島彰 / 三修社	2019
53	高齢者法: 長寿社会の法の基礎	樋口範雄 / 東京大学出版会	2019
54	国税通則・徴収法規集: 令和元年5月7日現在	日本税理士會連合會 / 中央經濟社	2019
55	(基礎から学べる)租税法	谷口勢津夫 / 弘文堂	2019
56	労働契約の基礎と法構造: 労働契約と労働者概念をめぐる日英米比較法研究	國武英生 / 日本評論社	2019
57	労働契約論の再構成: 小宮文人先生古稀記念論文集	小宮文人 / 法律文化社	2019
58	労働基準法の実務相談: 令和元年度[平成31年4月1日現在]	全国社会保険労働士會連合會 / 中央經濟社	2019
59	労働法. I	近藤昭雄 / 中央大学出版部	2003
60	労働組合法の応用と課題: 労働関係の個別化と労働組合の新たな役割	道幸哲也 / 日本評論社	2019
61	(圖解わかる)労働基準法: 2019-2020年版	莊司芳樹 / 新星出版社	2019
62	働き方改革関連法・パワハラ対応の企業実務	岩出誠 / 中央經濟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63	東アジアの医療過誤法	アジア医事法制研究会 / 日本評論社	2019
64	同一労働同一賃金の法律と実務: Q&Aでわかる均等・均衡待遇の具体例	服部弘 / 中央経済社	2019
65	法人税法規集: 令和元年7月16日現在	日本税理士會連合會 / 中央経済社	2019
66	社会保障法	黒田有志弥 / 有斐閣	2019
67	社会保障法研究 v.1	岩村正彦 / 信山社	2011
68	社会保障法研究 v.2	岩村正彦 / 信山社	2013
69	社会保障法研究 v.3	岩村正彦 / 信山社	2014
70	社会保障法研究 v.4	岩村正彦 / 信山社	2014
71	社会保障法研究 v.5	岩村正彦 / 信山社	2015
72	社会保障法研究 v.6	岩村正彦 / 信山社	2016
73	社会保障法研究 v.7	岩村正彦 / 信山社	2017
74	社会保障法研究 v.8	岩村正彦 / 信山社	2018
75	社会保障法研究 v.9	岩村正彦 / 信山社	2019
76	(税理士・春香の)民法講座: 税法の中の「民法」を探る	鹿田良美 / 清文社	2019
77	消費税法規通達集: 令和元年年8月1日 現在	日本税理士會連合會 / 中央経済社	2019
78	消費者法研究 v.6	信山社 / 信山社	2019
79	(要件事実で構成する)所得税法	伊藤滋夫 / 中央経済社	2019
80	医事法講座, 第6巻: 臓器移植と医事法	甲斐克則 / 信山社	2015
81	医事法講座, 第9巻: 医療情報と医事法	甲斐克則 / 信山社	2019
82	医事法辞典	甲斐克則 / 信山社	2018
83	自然環境法を学ぶ	神山智美 / 文眞堂	2018
84	障害者総合支援法のしくみ: たいせつな家族を守る!	デイリー法学選書編修委員会 / 三省堂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85	情報法概説	曾我部真裕 / 弘文堂	2019
86	租稅法判例六法	中里實 / 有斐閣	2019
87	租稅研究 v.2019-11	日本租稅研究協 / 日本租稅研究協會	2019
88	(知的財産・著作権の)ライセンス契約	山本孝夫 / 三省堂	2019
89	特許法	中山信弘 / 弘文堂	2019
90	特許・實用新案の法律相談. I	小松陽一郎 / 青林書院	2019
91	特許・實用新案の法律相談. II	小松陽一郎 / 青林書院	2019
92	廃棄物法制の軌跡と課題	北村喜宣 / 信山社	2019
93	現代雇用社会における自由と平等: 24のアンソロジー: 山田省三先生古稀記念	山田省三 / 信山社	2019
94	環境リスクと予防原則. 2: 予防原則論争	畠山武道 / 信山社	2019
95	環境規制の現代的展開: 大塚直先生還暦記念論文集	大塚直 / 法律文化社	2019
96	网络服务提供者侵犯著作权责任问题研究	张玲玲 /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9
97	文娱产业知识产权保护实证研究	郝敏 / 法律出版社	2019
98	商标实务指南	张锐 / 法律出版社	2019
99	知识产权引领经济高质量发展: 地方的探索与实践研究报告集	王宏 / 知识产权出版社	2019
100	知识产权评议的原理与制度研究	朱一飞 / 法律出版社	2019
101	知识产权布局和运营研究: 以现代生物技术为例	冯薇 / 科学出版社	2019

[국제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02	國際去來法研究 v.26-1	국제거래법학회 / 國際去來法學會	2017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03	國際去來法研究 v.26-2	국제거래법학회 / 國際去來法學會	2017
104	國際去來法研究 v.27-2	국제거래법학회 / 國際去來法學會	2018
105	國際去來法研究 v.28-1	국제거래법학회 / 國際去來法學會	2019
106	國際法務 v.11-2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 研究所 / 濟州大學校 法과 政策研究所	2019
107	國際法學會論叢 v.64-3	대한국제법학회 / 大韓國際法學會	2019
108	국제신분관계법령해설. I : 유럽	한국.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19
109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2019-01호: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와 오존 최적관리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0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2019-02호: 독일 지속가능성심사에 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1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2019-03호: 기후변화 소송: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2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2019-04호: 파리협정 이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법제 연구 -탄소배출 거래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3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슈페이퍼. 2019-05호: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오염관리 정책 및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	2019
114	외국사법제도연구. 25: 각국의 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2019
115	実証の国際法学	安藤仁介 / 信山社	2018
116	外國人の法律相談	東京弁護士會 / 學陽書房	2018
117	宇宙六法	青木節子 / 信山社	2019
118	(逐条解説)宇宙二法	宇賀克也 / 弘文堂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19	判例國際法	藥師寺公夫 / 東新黨	2019
120	核兵器禁止条約の時代: 核抑止論をのりこえる	山口響 / 法律文化社	2019

[헌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2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v.11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122	選舉研究 v.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9
123	憲法論叢 v.30	한국. 헌법재판소 / 憲法裁判所	2019
124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v.2018	한국. 헌법재판소 / 憲法裁判所	2019
125	クィアと法:性規範の解放/開放のために	綾部六郎 / 日本評論社	2019
126	ヨーロッパ憲法論	Habermas, Jürgen / 法政大学出版社	2019
127	公法研究 v.81	日本公法學會 / 有斐閣	2019
128	(新·コンメンタール)憲法	木下智史 / 日本評論社	2019
129	安倍改憲をあばく	社会民主党憲法改悪阻止闘争本部 / 東方出版	2019
130	議會政の憲法規範統制:議會政治の正軌道を求めて	加藤一彦 / 三省堂	2019
131	人權論入門:日本国憲法から考える	奥野恒久/法律文化社	2019
132	日本国憲法	長谷部恭男 / 岩波書店	2019
133	日本国憲法の力	杉原泰雄 / 三省堂	2019
134	自治体財政の憲法的保障	上代庸平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135	行政裁量と司法審査論:アメリカ司法審査論の展開と日本の動向	高橋正人 / 晃洋書房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36	憲法の中の自治、自治の中の憲法	日本地方自治学会 / 敬文堂	2019
137	憲法の最高法規性と基本権	山崎友也/信山社	2019
138	憲法を学問する	樋口陽一 / 有斐閣	2019
139	憲法基本判例を読み直す	野坂泰司 / 有斐閣	2019
140	憲法研究 v.1	信山社 / 信山社	2017
141	憲法研究 v.2	信山社 / 信山社	2018
142	憲法研究 v.3	信山社 / 信山社	2018
143	憲法理論の再構築:植野妙実子先生古稀記念論文集	植野妙実子 / 敬文堂	2019
144	(現代)ドイツ基本権	Pieroth, Bodo 永田秀樹 / 法律文化社	2019
145	現代憲法入門	只野雅人/法律文化社	2019

[행정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46	국가송무현황: 2017~2018	한국. 법무부 / 법무부 국가송무과	2019
14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0년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9
148	행정조사의 공법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 법원행정처	2019
149	(国家試験受験のためのよくわかる)行政法: 行政法を「生き生きと」学びたい人のために: 行政書士 / 公務員試験 / 学部試験	神余博史 / 自由国民社	2018
150	所有者不明の土地取得の手引: 売買・相続・登記手続	東京弁護士会法友会 / 青林書院	2019
151	条例の制定又は改廃の直接請求: 住民発意による政策実現の困難	賀来健輔 / 日本評論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52	住民訴訟の上手な活用法: 監査請求から訴訟までの理論と実務Q&A	井上元 / 民事法研究會	2019
153	(判例フォーカス)行政法	村上裕章 / 三省堂	2019
154	行政の構造変容と権利保護システム	浜川清 / 日本評論社	2019
155	行政法	櫻井敬子 / 弘文堂	2019
156	行政法. I: 現代行政過程論	大橋洋一 / 有斐閣	2019
157	行政法. II: 行政救済法	鹽野宏 / 有斐閣	2019
158	行政法研究 v.29	信山社出版 / 信山社出版	2019
159	行政法研究 v.30	信山社出版 / 信山社出版	2019
160	行政法判例集: 總論・組織法. I	大橋洋一 / 有斐閣	2019
161	行政訴訟の實務と理論	齋藤浩 / 三省堂	2019
162	行政訴訟の解釈理論	村上裕章 / 弘文堂	2019
163	行政調査の法的統制	曾和俊文 / 弘文堂	2019

[형법(형사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64	Journal of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By Environmental Design v.10-2	한국셉테드학회 / 한국셉테드학회	2019
165	矯正研究 v.84	한국교정학회 / 韓國矯正學會	2019
166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I: 2018. 1. ~ 2018. 12., 전체 현황 및 제1, 2기 설정범죄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19
167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II: 2018. 1. ~ 2018. 12., 제3기, 제4기, 제5기 설정범죄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2019
168	연간보고서 v.2018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	2019
169	한국형법학의 초기형성사 연구	오병두 / 법문사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0	형사법의 신동향 v.64	한국.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대검찰청	2019
171	(基本)刑法. I: 總論	大塚裕史 / 日本評論社	2019
172	性暴力被害者への支援員の役割: リプロダクティブ・ライツをまもる	性暴力救援センター・大阪SACHICO / 信山社	2018
173	特別刑法入門: 刑事法実務の基礎知識. 2	安富潔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174	刑法ガイドマップ(總論)	辰井聡子 / 信山社	2019
175	刑法基本講義: 總論・各論	佐久間修 / 有斐閣	2019
176	刑法總論	西田典之 / 弘文堂	2019
177	刑法總論の理論と実務	小林憲太郎 / 判例時報社	2018
178	刑法總論講義	前田雅英 / 東京大學出版會	2019

[상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79	保險法研究 v.13-2	韓國保險法學會 / 韓國保險法學會	2019
180	商事判例研究 v.32-4	한국상사판례학회 / 韓國商事判例學會	2019
181	(わかりやすい)共同海損	中田栄一 / 保險毎日新聞社	2018
182	(レクチャー)会社法	菊地雄介 / 法律文化社	2019
183	(基礎コース)商法. I: 總則・商行為法 / 手形・小切手法	丸山秀平 / 新世社	2018
184	保險業法: 2019	石田滿 / 文眞堂	2019
185	商法總則・商行為法	青竹正一 / 信山社	2019
186	實用海事六法: 2019年版. 上卷	海事法規研究會 / 成山堂書店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87	實用海事六法: 2019年版. 下卷	海事法規研究會 / 成山堂書店	2019
188	要件事實商法, (1): 總則·商行為 I	大江忠 / 第一法規	2019
189	要件事實商法, (2): 商行為 II·海商	大江忠 / 第一法規	2019
190	要件事實商法, (3): 海商 II	大江忠 / 第一法規	2019
191	有価証券報告書の記載事例の分析: 企業内容等の開示に関する内閣府令の改正を受けて	商事法務 / 商事法務	2019
192	(一問一答·平成30年)商法改正	松井信憲 / 商事法務	2018
193	定期傭船契約論	小林登 / 信山社	2019
194	(最新)小型船舶·漁船安全關係法令: 併載: 登録·測度に関する法令: 令化元年6月1日現在	日本. 国土交通省海事局安全政策課·検査測度課 / 成山堂書店	2019
195	(逐条解説)保険法	宮島司 / 弘文堂	2019
196	特定商取引法ハンドブック	齋藤雅弘 / 日本評論社	2019
197	会社法	神田秀樹 / 弘文堂	2019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98	(2015)국민과의 소통: 모범사례 매뉴얼	한국.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15
199	검정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긴급검토	이완규 / 한영문화사	2019
200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이종엽 / 사법정책연구원	2019
201	대법원 예산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법원행정처	2019
202	법원도서관 30년사: 미래를 향한 법률정보의 중심	법원도서관 / 법원도서관	2019
20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제3주기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04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매뉴얼: 제3주기 개정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9
205	사법 v.50	사법연구지원재단 / 사법발전재단	2019
206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계획수립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법원행정처	2019
207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철 / 사법정책연구원	2019
208	재판실무편람, 제17호: 환경재판실무편람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 환경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2019
209	韓日・日韓辯護士協議會 會誌 v.38	한일변호사협회의회 / 韓日辯護士協議會	2016
210	회생법원 연간보고서 v.2018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2019
211	回生法學 v.18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19
212	(コンパクト)倒産・再生再編六法: 判例付き	伊藤眞 / 民事法研究会	2019
213	(書式)会社非訟の實務: 申立てから手續終了までの書式と理論	森・濱田松本法律事務所 / 民事法研究会	2019
214	(続・争点)倒産實務の諸問題	倒産實務交流會 / 青林書院	2019
215	(新しい)契約解除法制と倒産・再生手續	事業再生研究機構 / 商事法務	2019
216	裁判員の判断の心理: 心理学実験から迫る	伊東裕司 / 慶應義塾大学三田哲学会	2019
217	仲裁・ADRフォーラム v.6	日本仲裁人協会 / 信山社	2019
218	(最新)裁判実務大系, 第10巻: 知的財産権訴訟, 1	高部眞規子 / 青林書院	2018
219	(最新)裁判実務大系, 第11巻: 知的財産権訴訟, 2	高部眞規子 / 青林書院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20	破産管財人の財産換価	岡伸浩 / 商事法務	2019
221	破産事件21のメソッド: こんなところでつまずかない!	東京弁護士会親和全期会 / 第一法規	2018
222	會社訴訟・仮処分の理論と實務	新谷勝 / 民事法研究會	2019
223	Judicial reform in Taiwan: Democratization and the Diffusion of Law	Chisholm, Neil / Routledge	2020

[민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24	(これからの)民事実務と理論: 実務に活きる理論と理論を創る実務	伊藤眞 / 民事法研究会	2019
225	(コンメンタール)民事訴訟法, IV: 第2編/第4章	秋山幹男 / 日本評論社	2019
226	民事訴訟実務の基礎, [1]: 記録篇	加藤新太郎 / 弘文堂	2019
227	民事訴訟実務の基礎, [2]: 解説篇	加藤新太郎 / 弘文堂	2019
228	民事裁判實務の基礎: 完全講義 上卷: 第1部: 基本構造・訴訟物, 第2部: 要件事實	大島眞一 / 民事法研究會	2019
229	民事裁判入門: 裁判官は何を見ているのか	瀬木比呂志 / 講談社	2019
230	比較民事手続法のトレンド, I	石川明教授記念手続法研究所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231	(裁判官が説く)民事裁判実務の重要論点: 名誉毀損プライバシー侵害編	加藤新太郎 / 第一法規	2019
232	(判例講義)民事訴訟法	小林秀之 / 弘文堂	2019
233	現代民事手続法の課題: 春日偉知郎先生古稀祝賀	春日偉知郎 / 信山社	2019

[형사소송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4	陪審制度論	Feuerbach, Paul Johann Anselm / 日本 評論社	2019
235	(事例でわかる)伝聞法則	工藤昇 / 弘文堂	2019

[민법]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36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와 연계담당자 운영 방안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 법원행정처	2019
237	家族法研究 v.33-3	한국가족법학회 / 韓國 家族法學會	2019
238	민법개정총서 6: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 조문편	한국. 법무부 / 법무부	2013
239	법인 아닌 사단의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이동선 / 사법정책연구원	2019
240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2008 .9. 1. ~ 2019. 9. 30. 제9권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 처 / 법원행정처	2019
241	(Before/After)相続法改正	潮見佳男 / 弘文堂	2019
242	(すぐに役立つ)財産管理〈信託・成年後見・遺言〉の法律 知識と活用法	松岡慶子 / 三修社	2019
243	(はじめての)相続+遺品整理	明石久美 / 水王舎	2018
244	(ケースでわかる)改正相続法	東京弁護士会 / 弘文堂	2019
245	スッキリ相続への道: 15のキーワードと32の相続事例 から読み解く: 揉めない・損しない・トクをする!	廣田龍介 / 方丈社	2018
246	(ゼロからわかる)相続と税金対策入門	株式会社エッサム / あ さ出版	2019
247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ための)成年後見入門: 制度の仕 組みが基礎からわかる	野崎和義 / ミネルヴァ 書房	2019
248	家族を「争族」から守った遺言書30文例	相続診断協会 / 日本 法令	2018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49	(概説)改正相続法: 平成30年民法等改正、遺言書保管法制定	堂蘭幹一郎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9
250	高葛藤紛争における子の監護権: 弁護士実務の視角から法的課題を問う	渡辺義弘 / 弘前大学出版会	2017
251	(顧問税理士ならこれだけは知っておきたい)相続法改正 Q&A	蓑毛誠子 / 中央経済社	2019
252	(今こそ使おう)「定期」借家契約: 空き家も民泊も…知らないなんてもったいない!	定期借家研究会 / 中央経済社	2019
253	(論点體系)判例民法. 1: 總則	能見善久 / 第一法規	2019
254	(論点體系)判例民法. 2: 物權	能見善久 / 第一法規	2019
255	(論点體系)判例民法. 3: 担保物權	能見善久 / 第一法規	2019
256	(論点體系)判例民法. 6: 契約 I	能見善久 / 第一法規	2019
257	(論点體系)判例民法. 7: 契約 II	能見善久 / 第一法規	2019
258	(論点體系)判例民法. 10: 親族	能見善久 / 第一法規	2019
259	民法. VI: 親族・相續	前田陽一 / 有斐閣	2019
260	民法講義録	新井誠 岡伸浩 / 日本評論社	2019
261	民事判例. 16: 2017年後期	現代民事判例研究會 / 日本評論社	2018
262	民事判例. 18: 2018年後期	現代民事判例研究會 / 日本評論社	2019
263	(配偶者居住權の新設等)改正相続法への対応と実務Q&A	Y&P法律事務所 / 日本法令	2019
264	変わる相続: 家族や時代に合わせた活用術!	曾根恵子 / サンライズパブリッシング	2019
265	非占有動産担保の競合	清水裕一郎 / 九州大学出版会	2019
266	(事例でわかる)相続法改正: 平成30年民法改正: 実務経験豊富な弁護士陣による執筆	東京弁護士会親和全期会 / 自由国民社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67	事实認定体系: 契約各論編. 1: 贈与 売買 交換 消費貸借 使用貸借	村田渉 / 第一法規	2019
268	事实認定体系: 契約各論編. 2: 賃貸借	村田渉 / 第一法規	2019
269	事实認定体系: 契約各論編. 3: 雇用 請負 委任 寄託 組合 終身定期金 和解	村田渉 / 第一法規	2019
270	相続法改正と税理士業務: 2019年度税制改正対応	上西左大信 / 日本法令	2019
271	相続相談標準ハンドブック: 法律・税金・登記・不動産 評価etc.各分野の専門家がQ&A形式で解説!	奈良恒則 / 日本法令	2019
272	相続実務必携	静岡県司法書士会あかし運営委員会 / 民事法研究会	2019
273	相続財産は"不平等"に分けなさい	成島祐一 / 幻冬舎	2018
274	成年後見より家族信託: 認知症の家族を守れるのはどっちだ!?	石川秀樹 / ミーツ出版	2019
275	(消費者のための)民法入門	村千鶴子 / 新世社	2019
276	所有者不明私道への対応ガイドライン: 複数の者が所有する私道の工事において必要な所有者の同意に関する研究報告書	共有私道の保存・管理等に関する事例研究会 / 金融財政事情研究会	2018
277	(新しい)民法の全条文: 債権法・成年年齢・相続法・特別養子改正	三省堂編修所 / 三省堂	2019
278	(新ハイブリッド)民法. 2: 物権・担保物権法	本田純一 / 法律文化社	2019
279	新債権法の論点と解釈	平野裕之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19
280	信託フォーラム v.9	日本加除出版 / 日本加除出版	2018
281	信託フォーラム v.10	日本加除出版 / 日本加除出版	2018
282	信託フォーラム v.11	日本加除出版 / 日本加除出版	2019
283	信託法をひもとく	佐久間毅 / 商事法務	2019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284	(実務解説)改正相続法	中込一洋 / 弘文堂	2019
285	(我妻・有泉コメント)民法: 総則・物権・債権	我妻榮 / 日本評論社	2019
286	(令和2年4月1日時点)新・民法全条文集: 重要旧条文併記	早稲田経営出版編集部 / 早稲田経営出版	2019
287	医療と法の新理論: 医療事故調査制度の適正な活用へ: 医療裁判の適正手続化へ	遠藤直哉 / 信山社	2019
288	離婚後の共同親権とは何か: 子どもの視点から考える	梶村太市 / 日本評論社	2019
289	(一問一答)相続法改正と金融実務	金融取引法研究会 / 経済法令研究会	2018
290	(一問一答)成年年齢引下げ	笹井朋昭 / 商事法務	2019
291	(一問一答)新しい相続法: 平成30年民法等<相続法>改正、遺言書保管法の解説	堂菌幹一郎 / 商事法務	2019
292	抵当権と時効	草野元己 / 関西学院大学出版会	2019
293	重要判例&事例でわかる相続の手引き: 平成30年相続法改正完全対応!	小谷健太郎 / 税務経理協会	2019
294	借地借家モデル契約と実務解説	満田忠彦 / 青林書院	2019
295	債権法總論	柳勝司 / 嵯峨野書院	2019
296	(最新)民法改正の基本と勘所がよ~くわかる本: 2020年4月1日施行の改正民法を図解!	萩原勇 / 秀和システム	2019
297	(逐条解説)割賦販売法. 第II巻	阿部高明 / 青林書院	2018
298	(逐条解説)割賦販売法. 第I巻	阿部高明 / 青林書院	2018
299	(判例にみる)損害賠償額算定の實務	升田純 / 民事法研究會	2019
300	(解説)民法(相続法)改正のポイント	大村敦志 / 有斐閣	2019
301	戸籍の重箱: 初任者のための戸籍実務のレシピ	山下敦子 / 日本加除出版	2019
302	和解論	遠藤歩 / 九州大学出版会	2019

[판례총서]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303	대법원판례해설 v.119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2019
304	대법원판례해설 v.120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2019

■ 일반도서

[총류]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1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01: 기관 심층인터뷰를 통한 BRM 단위과제 운영 개선 방안 수립	한국, 행정안전부 / 국가 기록원	2019
2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02: 「공공기록물법」 상의 기록의 개념 검토	한국, 행정안전부 / 국가 기록원	2019
3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03: 대통령기록물 평가체계 개선방안	한국, 행정안전부 / 국가 기록원	2019
4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30-4	한국비블리아학회 / 한국비블리아학회	2019

[사회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5	고용보험백서 v.2019	한국, 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보험정책과 / 고용노동부	2019
6	保險學會誌 v.120	한국보험학회 / 韓國 保險學會	2019
7	人口動態統計年報 v.2018-1	통계청 / 통계청	2019
8	주택신축단가표: 2020년 표준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	2019

[응용과학]

	서명 및 저자	출판사	출판년
9	헌정록: 명예의전당: 2009~2019	대한의학회 / 대한의학회	2019

■ 국내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B.F.L(2020.1) 9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격월간
2	Legal Times V138	(주)리걸타임즈	월간
3	거래가격 588,589호	(주)거래가격	월간
4	고시계 755호	국가고시학회	월간
5	국제거래법연구 26집1,2/27집2/28집1	국제거래법학회	반년간
6	국제법학회논총 64권 3호	대한국제법학회	부정간
7	국제사법연구 25권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반년간
8	기업법연구 33권4호 (79호)	한국기업법학회	계간
9	노동법률 2020.1.	中央經濟社	월간
10	노동법학 72호	한국노동법학회	계간
11	문학사상 567호	문학사상사	월간
12	법과 정책연구 19집4호	한국법정책학회	반년간
13	한국아동복지학 68호	한국아동복지학회	계간
14	법학 60권4호(193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계간
15	사법행정 제61권 제1호(709호)	韓國司法行政學會	월간
16	상사판례연구 32집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계간
17	속보삼일총서 1550+부록/1551/1552/1553/ 1554+부록	삼일회계법인	주간
18	스포츠와 법 22권4호	한국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3회

	서명	발간처	간기
19	시사저널 1575/1576/1574/1577/1578/1579-1580	독립신문사	주간
20	신동아 2020. 1./2.	(주)동아피디에스	월간
21	월간 인사관리 2020.01.	한국인사관리협회	월간
22	월간조선 2020년 1,2월	조선일보사	월간
23	월간중앙 2020. 1,2월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월간
24	이코노미스트 1514,1515,1516,1517,1518,1519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주간
25	종합물가정보 590호 I ,부록/591호 I ,부록	한국물가정보	월간
26	주간조선 N2586,2587,2588,2589,2590,2591,2592	조선일보사	주간
27	지방자치법연구 19권4호(6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반년간
28	창작과 권리 97호	세창출판사	계간
29	출판저널 V514	(주)출판저널문화미디어	월간
3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권4호	한국도서관.정보관리학회	계간
3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권4호	한국비블리아학회	계간
32	해사법연구 31권3호	한국해사법학회	연3회
33	헌법학연구 25권4호	한국헌법학회	계간
34	현대문학 2020년 1월	(주)현대문학	월간

■ 일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旬刊)商事法務 N2214, 부록,2215,2216,2217	商事法務研究會	순간
2	別冊 商事法務 N445,446	商事法務研究會	부정기
3	登記情報 59권 제12호	民事法情報センタ	월간
4	N.B.L 1158호,1159,1160	商事法務研究會	반월간
5	アメリカ法 2019-1	日米法學會	반년간

	서명	발간처	간기
6	COPYRIGHT V59 N704	著作権情報センター	월간
7	ジュリスト 1539호	有斐閣	격주간
8	別冊 ジュリスト V245,246	有斐閣	격주간
9	パテント(Patent) V72 13호(854) / V72 14호(855)	日本弁理士會	월간
10	國際商事法務 V47 N12	國際商事法研究所	월간
11	金融·商事判例 N1578,1579,1580+부록	經濟法令研究會	반월간
12	金融法務事情 2126,2127호	金融財政事情研究會	순간
13	勞動法律旬報 1948,1949호	勞動旬報社	순간
14	勞動判例 N1209,1210호	産業勞動調査所	반월간
15	登記研究 861호	テイハン	월간
16	民商法雜誌 155권5호	有斐閣	월간
17	發明 V116 N12	發明協會	월간
18	法律のひろば 72권 12호	きょうせい	월간
19	法律時報 91권13호	日本評論社	월간
20	法律判例文獻情報 492호	第一法規	월간
21	法曹時報 71권11호	法曹會	월간
22	法學教室 471호	有斐閣	월간
23	法學論叢 185권5,6호	有斐閣	월간
24	法學協會雜誌 135권11호	有斐閣	월간
25	税法学 582호	日本税法学会	반년간
26	損害保險研究 81권3호	損害保險事業總合研究所	계간
27	銀行法務 21 850호	經濟法令研究會	월간
28	日本法醫學雜誌 73권2호	日本法醫學會	반년간
29	自治研究 95권12호	良書普及會	월간
30	租稅研究 842호	日本租稅研究協會	월간

	서명	발간처	간기
31	阪大法學 69권3-4호	大阪大學法學部	격월간
32	判例タイムズ 1465호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33	判例時報 N2420,2421,2422,2423	判例時報社	순간
34	判例地方自治 N451,452	きょうせい	월간
35	刑事法ジャーナル V62	イウス出版	계간
36	戸籍 974호	テイハン	월간

■ 양서 정기간행물 구입목록

	서명	발간처	간기
1	Actualidad Juridica Aranzadi N948,950,951,957,	EditorialAranzadi S.A.	월간
2	Air and Space Law VOL44 N6	Kluwer law International	격월간
3	Arsp (Archiv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Archives For Phil) V105 ISSUE4	Franz Steiner Verlag	격월간
4	Betriebs-Berater (BB) J74 H46,49,50,51-52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주간
5	Bundesgesetzblatt:Part 1 & Part 2 I ,Nr39,40,41, 42,43,44,45,46 / II .Nr19,20,21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2회
6	Der Deutsche Rechtspfleger J127 H12	Giesecking	월간
7	Der Spiegel 2019N51	Spiegel	주간
8	Deutsche Richter Zeitung J97 H12	Carl Heymanns	월간
9	Deutsches Verwaltungsblatt(DVBL) (Includes: Verwaltungsarchiv) J134 H23	Carl Heymanns	반월간
10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 J64 H22,23	Otto Schmidt	격주간

	서명	발간처	간기
11	Droit Social 2019N12	EDITIONS TECHNIQUES ET ECONOMIQUES	월간
12	Euzw (Europä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30H2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13	Familie Und Recht J30H12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월간
14	Family Court Review VOL57 N4	Blackwell	계간
15	Gewerblicher Rechtsschutz und Urheberrecht(GRUR) J121 N12	VCH	월간
16	GWR(GESELLSCHAFTS UND WIRTSCHAFTSRECHT) J11 H23,24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17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31 N3	Oxford Journal	연3회
18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41 H10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월간
19	Juristen Zeitung (JZ) J74H18,23	J.C.B. Mohr	반월간
20	Juristische Rundschau 2019 H11,12	Walter de Gruyter	월간
21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2019 H9	C.H.Beck	월간
22	Kritische Justiz J52 H4	Nomos Verlagsgesellschaft mbH und Co. KG	계간
23	La Semaine Juridique 1. edition generale 2019 N43,48,49	Juris-Classeur	주간
24	La Semaine Juridique 1. entreprise et affaires 2019 N45,47,48	JCP	주간
25	La Semaine Juridique 2. notariale et immobiliere 2019 N46,47,48	JCP	주간
26	L'actualitéJuridiqueDroitAdministratif(AJDA) N41,42	Dalloz	주간

	서명	발간처	간기
27	Le Droit Ouvrier N857	Le Droit Ouvrier Diffusion	격월간
28	Lloyd's Law Reports:Insurance& Reinsurance 2019 P10	LLP	연10회
29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73 H23	Otto Schmidt	반월간
30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NJW) J72 H50,51 Spezial 24	C.H.Beck	주간
31	Neue Zeitschrift Fur Arbeitsrecht(Nza) J36 H23	Verlag C. H. Beck oHG	격주간
32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NVwZ) J38 H24, 19-INDEX	C.H.Beck	월간
33	NZG(Neue Zeitschrift für Gasellschaftsrecht) J22 H35,36	Verlag C. H. Beck oHG	순간
34	Österreichische Juristen-Zeitung (ÖJZ) J74 H23-24	Manz	반월간
35	Recht Der Arbeit J72 H5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36	Recueil Le Dalloz N42,43	Dalloz	주간
37	Revue De Jurisprudence Sociale 2019. 12.	EFL-Editions Francis Lefebvre	월간
38	Rsc(Revue De Science Criminelle Et De Droit Penal Compare) 2019 N3	EDITIONS DALLOZ	계간
39	Strafverteidiger(StV) J39 N12	Alfred Metzner	월간
40	(The) cambridge law journal VOL78 P3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연3회
41	The Economist V433 N9173(12.14/12.20)/V433 N9174(12.21/1.3)	The Economist Group	주간
42	TIME 12.23/12.30.	Time Asia	주간
43	WM (Wertpapier-Mitteilungen:Zeitschrift Für Wirtschafts Und Ba) J73 N47,48,49	WM Wirtschafts-und Bankrecht	주간

	서명	발간처	간기
44	Wuw (Wirtschaft Und Wettbewerb; Zeitschrift Für Kartellrecht, W) J69 H12	Fachverlag der VHB GmbH	월간
45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66 H23	Gieseking	반월간
46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Handelsrecht und Wirtschaftsrecht B183 H6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격월간
47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ZIP) J40 H44,47,49,50 EWIR22,23	RWS	주간
48	Zeitschrift für Zivilprozess : ZZP Bd132 H2,4	Carl Heymanns Verlag	계간